

※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,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ជំពោះអត្ថបទបកប្រែ គឺប្រើសម្រាប់ការអាន ដើម្បីដាក់ពាក្យបណ្តឹងរដ្ឋប្បវេណី, ដូច្នេះសូមកត់ចំណាំថា អ្នកត្រូវតែបំពេញ
ហើយដាក់ឯកសារជាភាសាកូរ៉េ នៅក្នុងទម្រង់បែបបទដើម។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3. 10. 6.>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■ បទបញ្ញត្តិអនុវត្តនៃច្បាប់ស្តីពីការរាយការណ៍ប្រតិបត្តិការអចលនទ្រព្យ [ឧបសម្ព័ន្ធ ទម្រង់បែបបទ លេខ 6] < ធ្វើរើសាធនកម្មឆ្នាំ 2023. 10. 6.>

អ្នកអាចដាក់ពាក្យបានតាមរយៈប្រព័ន្ធគ្រប់គ្រងទិន្នន័យអចលនទ្រព្យ (rtms.molit.go.kr)។

[]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
[] លិខិតរាយការណ៍ការទិញយកអចលនទ្រព្យ
ជាដើមដោយជនបរទេស
[]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
[] លិខិតរាយការណ៍ការកាន់កាប់បន្តនៃអចលនទ្រព្យជាដើម ដោយជនបរទេស

※ 뒤쪽의 유의사항·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※ សូមអានកំណត់ចំណាំ និងការណែនាំនៅទំព័រខាងក្រោយ រួចគូសសញ្ញា √ ក្នុង [] ដែលត្រូវនឹងអ្នក។ (ទំព័រមុខ)

접수번호 លេខដាក់ពាក្យ	접수일시 កាលបរិច្ឆេទដាក់ពាក្យ	처리기간 즉시 រយៈពេលដំណើរការ ភ្លាមៗ
신고인 អ្នករាយការណ៍	성명(법인명) ឈ្មោះ(ឈ្មោះក្រុមហ៊ុន)	외국인(법인)등록번호 លេខអត្តសញ្ញាណប័ណ្ណជនបរទេស (លេខចុះបញ្ជីពាណិជ្ជកម្ម)
	국적 សញ្ជាតិ	①국적 취득일자 ①កាលបរិច្ឆេទទទួលសញ្ជាតិ
	생년월일(법인 설립일자) ថ្ងៃខែឆ្នាំកំណើត (ថ្ងៃបើកក្រុមហ៊ុន)	(휴대)전화번호 លេខទូរស័ព្ទ(ដៃ)
	②주소(법인소재지) ②អាសយដ្ឋាន (ទីតាំងក្រុមហ៊ុន)	(거래지분 : 분의) (ចំនួនភាគហ៊ុនជួញដូរ : / ភាគ)
신고사항 ចំណុចរាយការណ៍	③취득 원인 ③មូលហេតុនៃការទិញ	④상세 원인 ④មូលហេតុលម្អិត
	⑤원인 발생일자 ⑤ កាលបរិច្ឆេទនៃការកើតឡើងនៃ មូលហេតុ	⑥취득 가액(원) ⑥តម្លៃទិញ (វ៉ុន)
	⑦종류 ⑦ប្រភេទ	[]토지 []건축물 []토지 및 건축물 []ដី []សំណង់អាការ []ដី និងអគារ
	[]공급계약 []전매 []키드스슈가플러 []공급계약 []분양권 []입주권 []키드스슈가플러 []공공전 []공공후 []부동산매매계약 []부동산매매계약	[]공공전 []공공후 []부동산매매계약 []부동산매매계약
	⑧소재지 ⑧ទីតាំង	
	⑨토지 (지목:)/(취득면적: m²)/(지분: 분의) ⑨ដី (ប្លង់ដី:)/(ផ្ទៃដី: m²)/(ភាគហ៊ុន: / ភាគ)	(대지권비율: 분의)

- ⑥ 증여, 상속 등에 따라 취득 가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원인 발생 연도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적을 수 있으며,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경우 “취득 가액”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⑥ **“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”**란에 “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”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- ⑦ “종류”란에는 토지,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(복합부동산의 경우) 해당란에 √표시합니다.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(분양)하는 계약이고,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고, 세무항목 분양권, 입주권, 준공전, 준공후 각 해당란에도 √표시를 합니다.
- ⑦ **“소재지”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·지번(아파트 등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동·호수까지)을 적습니다.**
- ⑧ **“토지”란에는 법정 지목,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, 지분 또는 집합건물 대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.**
- ⑧ **“건축물”란에는 아파트, 단독주택 등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취득면적을 정확하게 적고,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적습니다.**
- ⑨ **“취득”란에는 주거용(아파트), 주거용(단독주택), 주거용(그 밖의 주택), 레저용, 상업용, 공장용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,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.**
- ⑩ **“취득”란에는 주거용(아파트), 주거용(단독주택), 주거용(그 밖의 주택), 레저용, 상업용, 공장용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,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.**
- ⑪ **“취득”란에는 주거용(아파트), 주거용(단독주택), 주거용(그 밖의 주택), 레저용, 상업용, 공장용, 그 밖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적고, 취득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용도를 적습니다.**
- ※ 부동산, 관계 필지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.
- ※ **“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”**란에 “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”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